

- 法定洞間境界變更調整案에 대한 -
意 見 書

總 務 社 會 委 員 會

-法定洞間境界變更調整案에 對한-
意 見 書

금회 舊平洞과 多大洞間的 區劃境界를 조정함에 있어 周邊 狀況變動으로 기존의 일정 區域이 行政의 效率性 提高를 위해 改編되지 않으면 안될 경우인지, 아니면 特定地域의 利益에 偏重되는 사항을 배제하고, 住民 便益을 배려한 것인가에 着眼點을 두고 當 議會에서는 향후에 예측되는 住民과 入住 業體의 共同生活圈과 행정작용이 미치는 範圍에 대하여 綜合的인 檢討를 하였습니다.

현재 立地與件과 周邊의 將來 開發展望 등을 고려해 볼 때, 현 상태의 區劃境界로는 향후 該地에 대한 행정작용이 미치는 逆機能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. 따라서今回 舊平洞 管轄로 일부편입 되는 地域은 舊平洞의 地域的 行政事務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給付 能力이 확보되어 住民의 地域的 결합성과 洞事務所 等 公共機關의 管轄권이 미치는 地域的 範圍가 合理的으로 조정된 案이라 생각되므로 區廳長이 立 案한 境界變更 調整案에 대하여는 별다른 異見이 없음.

1999년 7월 19일